

안동대학교학칙

	제정	1979. 3. 1.	(규정 제1호)
31차	개정	2004. 2.16.	(규정 제449호)
32차	개정	2004.11.18.	(규정 제460호)
33차	개정	2005. 3. 1.	(규정 제469호)
34차	개정	2005. 8.18.	(규정 제482호)
35차	개정	2005.12. 6.	(규정 제490호)
36차	개정	2006. 2.16.	(규정 제496호)
37차	개정	2006. 4.10.	(규정 제505호)
38차	개정	2006. 5.25.	(규정 제519호)
39차	개정	2006. 8.29.	(규정 제520호)
40차	개정	2006.10.24.	(규정 제529호)
41차	개정	2006.12.26.	(규정 제539호)
42차	개정	2007. 4.18.	(규정 제546호)
43차	개정	2007. 9.17.	(규정 제556호)
44차	개정	2007.11.21.	(규정 제558호)
45차	개정	2008. 9. 5.	(규정 제584호)
46차	개정	2008. 9.25.	(규정 제586호)
47차	개정	2008.12.11.	(규정 제594호)
48차	개정	2009. 2. 1.	(규정 제601호)
49차	개정	2009. 4.17.	(규정 제620호)
50차	개정	2009. 6.19.	(규정 제635호)
51차	개정	2009. 8.27.	(규정 제644호)
52차	개정	2009.11. 9.	(규정 제647호)
53차	개정	2010.06. 3.	(규정 제687호)
54차	개정	2010.10.27.	(규정 제696호)
55차	개정	2010.11.26.	(규정 제702호)
56차	개정	2011.11. 3.	(규정 제738호)
57차	개정	2011.12.29.	(규정 제748호)
58차	개정	2012. 1. 6.	(규정 제750호)
59차	개정	2012. 3.28.	(규정 제797호)
60차	개정	2012. 6.27.	(규정 제808호)
61차	개정	2012.10.11.	(규정 제817호)
62차	개정	2012.10.31.	(규정 제824호)
63차	개정	2013. 6.21.	(규정 제862호)
64차	개정	2014. 1. 9.	(규정 제887호)
65차	개정	2014. 3.18.	(규정 제896호)
66차	개정	2014. 5.15.	(규정 제903호)
67차	개정	2014. 7.17.	(규정 제909호)
68차	개정	2014.12.30.	(규정 제927호)
69차	개정	2015. 2.25.	(규정 제930호)
70차	개정	2015. 4.22.	(규정 제937호)
71차	개정	2015. 7.16.	(규정 제941호)
72차	개정	2016. 1.18.	(규정 제973호)

73차 개정	2016. 3.29.	(규정 제984호)
74차 개정	2016. 6.29.	(규정 제993호)
75차 개정	2016. 8. 8.	(규정 제1039호)
76차 개정	2016.11.22.	(규정 제1046호)
77차 개정	2017. 1. 5.	(규정 제1064호)
78차 개정	2017. 2.24.	(규정 제1074호)
79차 개정	2017. 3.27.	(규정 제1077호)
80차 개정	2017. 6.26.	(규정 제1090호)
81차 개정	2017.11.14.	(규정 제1109호)
82차 개정	2018. 1.15.	(규정 제1122호)
83차 개정	2018. 2.23.	(규정 제1124호)
84차 개정	2018. 4.10.	(규정 제1132호)
85차 개정	2018. 8.16.	(규정 제1143호)
86차 개정	2019. 2.25.	(규정 제1167호)
87차 개정	2019. 6.26.	(규정 제1201호)
88차 개정	2020. 2.28.	(규정 제1240호)
89차 개정	2020. 6.24.	(규정 제1267호)
90차 개정	2020. 7.30.	(규정 제1269호)
91차 개정	2021. 2. 2.	(규정 제1295호)
92차 개정	2021. 2.25.	(규정 제1300호)
93차 개정	2021. 4.19.	(규정 제1324호)
94차 개정	2021. 5.13.	(규정 제1332호)
95차 개정	2021. 6.30.	(규정 제1334호)
96차 개정	2021.11. 5.	(규정 제1371호)
97차 개정	2022. 2.24	(규정 제1378호)
98차 개정	2022. 4.15	(규정 제1413호)
99차 개정	2022. 6.21	(규정 제1423호)
100차 개정	2022.11. 9.	(규정 제1453호)
101차 개정	2023. 1.25.	(규정 제1459호)
102차 개정	2023. 5.30.	(규정 제1484호)
103차 개정	2023. 8.24.	(규정 제14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안동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안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성실하며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 발전에 공헌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신설 2018.1.15.)(개정 2022.4.15)

② 이 대학교의 인재상은 바른 됬됨이로 함께 하는 안동대人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8.1.15.)

1. 올바른 품성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인재 양성
2. 넓고 깊은 배움으로 자신감을 갖는 인재 양성
3. 하나를 보며 다음을 그려내는 인재 양성
4. 여러 가치와 함께 어울리는 인재 양성

[제목 개정: 2018.1.15.]

제3조(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① 이 대학교에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생명과학·건강 복지대학, 공과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자유전공학부, 성인학습자학부를 둔다.(개정 2009.11.9., 2010.11.26., 2017.3.27., 2022.4.15., 2023.5.30.)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을 둔다.(신설 2017.3.27.)

③ 각 단과대학에는 학과 및 학부를 두며 학생의 모집단위는 학과 또는 학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7.)

④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학원은 대학원학칙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3.27.)

제3조의2(융·복합전공 및 맞춤형 학과 등 설치·운영) ① 이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력에 의한 융·복합전공 및 맞춤형 학과 등을 둘 수 있다

② 융·복합전공 및 맞춤형 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9.]

제4조(대학원) 일반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의 학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1.9., 2010.11.26.)

제5조(부속시설 등) ① 이 대학교에 도서관 및 정보통신원을 두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09.4.17., 2010.11.26.)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해당소속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6.26.)

⑤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4.17.)

제5조의2(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09.2.1.)(개정 2012.6.27.)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2.1.)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9.2.1.)

제5조의3(학생군사교육단) ① 이 대학교에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안동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10.6.3.)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학군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6.3.)

③ 학군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6.3.)

제5조의4(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별표 4의 학교기업을 둔다.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5.]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신설 2012.3.28.)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신설 2012.3.28., 개정 2018.2.23., 2022.11.9.)

③ 제2항 및 임용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3.28., 개정 2018.2.23.)

제7조(학장·대학원장) ① 단과대학·대학원에 각각 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

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이 겸보할 수 있다.

②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학과장·학부장) ① 학과 또는 학부에 장을 각각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과장 및 학부장은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조직의 장,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다만, 대학본부 소속 학부장은 예외로 함) 당해 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8.8.16., 2020.7.30.)

제9조(조직) ① 이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입학처 및 사무국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2.1., 2021.6.30.)

② 삭제 <2016.8.8.>

③ 교무처에 교무과·교육혁신과를, 학생처에 학생지원과·취업창업지원과를, 기획처에 기획과를, 입학처에 입학관리과를, 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도서관에 학술정보과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업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2.1., 2012.10.11., 2016.3.29., 2016.8.8., 2020.7.30., 2021.6.30., 2022.2.24.)

④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학술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2.1.)

⑤ 대학원 및 단과대학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으며, 행정실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업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2.1., 2016.3.29.)

제9조의2(기타 행정조직) ① 이 대학교에 기타 행정조직으로 대외협력본부, 교무처에 교육혁신본부, 학생처에 취업창업본부, 학생상담센터, 기획처에 전략평가본부, 연구실안전관리센터를 두며, 본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2.25., 2020.7.30., 2021.6.30., 2022.2.24., 2023.5.30.)

②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실,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과, 교수역량강화센터, 학생역량강화센터, 교양교육원, 어학원을 두고, 취업창업본부에 취업창업지원과, 전략평가본부에 기획과를 두며, 센터장 및 원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2.25., 2020.7.30., 2021.6.30., 2022.2.24.)

③ 이 대학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그 밖의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의 설치와 운영 및 분장사무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8.]

제10조(교무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사무국장, 도서관장, 정보통신원장, 산학협력단장,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개정 2009.4.17., 2012.10.31., 2014.7.17., 2018.4.10., 2020.6.24., 2021.6.30., 2022.11.9.)

③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과(부), 부속시설 및 각종 위원회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대학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후생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는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총 위원수의 1/2을 초과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2021.6.30.)

③ 제1항의 위원회 외에 이 대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2(재정위원회) ①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2.2.]

제11조의3(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2.2.]

제12조(대학평의회)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동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8.16.]

제13조(교수회) ① 대학의 교육 및 운영·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교수회를 둔다.(개정 2014.3.18., 제목개정 2016.1.18.)

② 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회 평의회를 둔다.(개정 2016.1.18.)

③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하 “전임교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6.27., 2016.1.18.)

④ 교수회는 회장(이하 “교수회장”)을 두며 교수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6.1.18.)

⑤ 교수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여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신설 2016.1.18.)

⑥ 교수회가 개최하는 “교수회의”는 교수회장이 소집하며 교수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장, 재적 전임교수 1/5 이상 또는 교수회 평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를 소집한다.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6.1.18.]

⑦ 총장은 교수회 관련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신설 2016.1.18.)

1. “교수회의” 소집 요구
2. 심의 안건 부의 및 “교수회의” 참석
3. 총장이 부의한 심의 안건에 대한 임시의장 선임

⑧ “교수회의”는 재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항에서 이동·개정 2016.1.18.]

⑨ “교수회”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1.18.)

⑩ 삭제 <2014.3.18.> [제6항에서 이동 2016.1.18.]

[제12조에서 이동 2018.8.16.]

제13조의2(교수회 평의회) ① 교수회 평의회(이하 “평의회”)는 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각 학부·학과(전공) 전임교수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8., 2018.8.16.)

② 교수회장은 평의원이 되며 평의회 의장을 맡는다.(개정 2016.1.18.)

③ 삭제 <2016.1.18.>

④ 삭제 <2016.1.18.>

⑤ “평의회”의 구성, 역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18.)

[제13조에서 이동 2018.8.16.]

제14조(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 ①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에 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를 둔다.(개정 2009.11.9.)

②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이 된다.(개정 2009.11.9., 2012.6.27.)

③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교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9.)

⑤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09.11.9.)

1. 학칙 및 제 규정의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장학, 후생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7.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교원의 소속 및 임무) ① 이 대학교의 교원은 전공에 따라 학과(부),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및 부속시설 등에 소속될 수 있다.(신설 2011.12.29., 개정 2017.11.14., 2018.8.16., 2023.8.24.)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11.14.)

제15조의2(계약제 임용 등) 이 대학교의 교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의3(교원의 교수시간) ① 이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교원의 교수시간 일부면제, 교수시간 제한, 초과 강사로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강사) ① 이 대학교의 교과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9.6.26.)

② 제1항의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6.26.)

[제목변경 2019.6.26.]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이 대학교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연구교수”라 한다) 및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1.26., 2012.6.27.)

②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교수 및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1.26., 2012.6.27.)

제17조의2(대학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한다.(신설 2009.4.17.)

② 대학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한 평가(개정 2015.7.16.)
2. 교수업적평가
3. 학과평가
4. 부속시설평가
5. 부서평가

③ 전항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 1호의 평가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제18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재학연한) ① 이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편입학자의 경우 2년을 제1항의 재학연한에서 감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주수 및 휴업일

제20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교육목적, 전공, 학습자의 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27.)

③ 삭제<2006.2.20.>

제20조의 2(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2.16.)

제21조(수업주수) ① 수업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 개강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교과목의 특성상 단기 및 집중이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27.)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2015.7.16.)

제22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0.)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3월 12일)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6. 근로자의 날

②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및 등록

제23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 부터 수업일수 1/4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은 학기 초로 부터 1/4이내로 한다.

제24조(입학지원자격) 이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5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이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그 전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내로 한다.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④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1-4학년 학생의 제적자수에서 편입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허가한다.

⑤ 편입학은 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1-2학년 제적 인원만큼 허가한다. 다만, 학사 편입학 전체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못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3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8.8.16.)

⑥ 편입학 또는 재입학자 수는 4월 1일자 및 10월 1일자 재적생 변동 상황에 명시되는 제적자 수로 하되 직전학기 재적생 변동 상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⑦ 이 대학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학과에 3학년으로 정원 외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전체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3%를 초과하지 못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3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8.8.16.)

⑧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입학지원서류와 전형료) ① 입학지원자(편입학 포함)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6.26.)

② 삭제<2017.6.26.>

③ 삭제<2017.6.26.>

④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26.)

[제목변경 2017.6.26.]

제27조(입학자의 선발) ①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아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3. 대학별고사

② 총장은 입학자의 선발을 위한 일시,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그 때마다 정하여 공고한다.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29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1.3.)

제29조의 2(입학취소 등) ①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의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2022.6.21)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한다.

③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에서 제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사람은 이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는 입학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6.26.]

제30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제6장 학과·전공결정 및 전과[제목변경 2017.3.27.]

제31조(학과·전공결정) ① 모집단위가 통합 학부(창의융합학부 포함)인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여건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개정 2017.3.27.)

② 전공결정은 2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한다.(개정 2017.3.27.)

③ 모집단위내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며, 그 시기는 3학년 2학기 이내로 한다.

④ 전공결정 및 전공변경의 범위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변경 2017.3.27.]

제32조(자유전과) ① 모집단위간 이동(이하 “자유전과” 라 한다)의 범위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7.1.5.)

② 자유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또는 3학년에 허가할 수 있으며, 자유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17.1.5.)

③ 자유전과 지원자는 자유전과원서를 교육혁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5., 2022.2.24.)

④ 자유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5.)

[제목변경 2017.1.5.]

제7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33조(휴학) ① 학생은 창업, 질병,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신입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2013.6.21.)

② 휴학의 종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1.)

제34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복학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9.5.)

제3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제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1. 재학 연한 내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복학허가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학적을 가진 자
6. 삭제<2016.11.22.>

제8장 교육과정운영 및 성적관리

제37조(교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이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체육, 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양과목의 편성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술, 체육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한다.

④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의2(국내·외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 운영) ① 학위과정별로 국내·외 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6.2.16.)(개정 2021.6.30.)

② 공동학위과정 및 복수학위과정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6.30.)

[제목변경 2021.6.30.]

제37조의3(공학교육인증) ① 공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과정을 둔다.

②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6.10.23.)

제37조의4(ANU졸업역량인증제) ① 학생들의 졸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과(부)·전공에서는 ANU졸업역량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ANU졸업역량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5.]

제37조의5(마이크로 과정) ① 학생들의 융복합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마이크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38조(교양과목의 이수) 학생은 교양과목으로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35학점(간호학과는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5., 2023.1.25.)

[제목변경 2018.1.15.]

제39조(전공과목의 이수) ① 학생은 전공과정으로 다중전공 또는 일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1.15.)(개정 2023.1.25.)

② 다중전공은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으로 구분하고, 다중전공 이수자의 전공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화전공 이수자: 주전공 72학점(간호학과는 102학점) 이수
2. 복수전공 이수자: 주전공 36학점, 복수전공 36학점 이수
3. 부전공 이수자: 주전공 51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수
4. 융합전공 이수자: 주전공 36학점, 융합전공(복수전공) 36학점 이수 또는 주전공 51학점 융합전공(부전공) 21학점 이수

(신설 2018.1.15.)(개정 2019.2.25., 2020.2.28., 2023.1.25.)

③ 일반전공 이수자의 전공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학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11.3., 2015.4.22., 2018.1.15., 2023.1.25.)

④ 최소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15., 2023.1.25.)

[제목변경 2018.1.15.]

제40조(일반선택과목의 이수) 일반선택과목은 이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41조(주전공, 융합전공,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① 주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 학과(부)·전공의 전공과정을 말한다.(신설 2019.2.25.)

② 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에서 교육과정을 상호 협동·융합하거나, 학과(부)·전공과 참여 교수가 교육과정을 상호 협동·융합하여 개설한 전공과정을 말하며, 융합전공 이수를 원하는 자는 융합전공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별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2.25.)

1. 주전공: 36학점 또는 51학점 이상
2.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3. 부전공: 21학점 이상

③ 심화전공(단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의 최소 전공 이수학점 이외에 주전공의 심화 학습을 위하여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2.25.)

④ 복수전공이라 함은 주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부)·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전공 이수를 원하는 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2.25.)

⑤ 부전공이라 함은 주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부)·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부전공 이수를 원하는 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2.25.)

⑥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변경 2018.1.15., 2019.2.25.]

제42조(교직과정) ① 이 대학교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② 교직과정의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9.)

③ 교직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44조(교과목번호) ① 각 교과목에 대하여 대학별, 학과(부)별, 학기별 등으로 종합표시가 가능하도록 교과목번호를 부여한다.

② 교과목번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수강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최대 20학점(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학과는 21학점)까지, 14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최대 21학점(사범대학의 모든 학과는 22학점)까지, 졸업학점 150학점인 학과의 학생은 최대 2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군사학은 수강신청 최대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학 간 각 협약에 따라 교외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은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4.1.9., 2014.7.17., 2017.3.27., 2018.1.15., 2021.2.2., 2021.1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3학점(1학년은 2학점)(제2호의 경우는 잔여학점 범위내)까지 초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1호가 우선 적용된다. (개정 2014.1.9., 2014.7.17., 2019.2.25.)

1.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신설 2019.2.25.)
2.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수강신청 최저 학점 이상이면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미달하여 잔여학점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9.2.25.)

제4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일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기재한 수강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수강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시험) ① 매학기 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 ② 학기마다 수업한 총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48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출석성적은 반드시 5~30%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2.)

-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목의 성적은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급	평 점	실 점	등급	평 점	실 점
A ⁺	4.5	95~100	A ⁰	4.0	90~94
B ⁺	3.5	85~ 89	B ⁰	3.0	80~84
C ⁺	2.5	75~ 79	C ⁰	2.0	70~74
D ⁺	1.5	65~ 69	D ⁰	1.0	60~64
F ⁺	0	59이하			

- ③ D⁰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 ④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교과목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하고, 재이수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삭제한다. 다만,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의한 재이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7.17., 2014.12.30., 2018.1.15.)
- ⑥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학사경고) ① 학기말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개정 2011.11.3., 2016.11.22., 2019.6.26.)

-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자의 지도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1.15., 2019.6.26.)

[제목변경 2019.6.26.]

제50조(학점인정 · 취소 · 포기)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취득으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매학기말에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②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8학점까지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15.)
- ③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1.22.)
- ④ 삭제<2014.7.17.>

제51조(편입학자의 학점)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편입학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타대학 등의 학점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및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2018.8.16.)

1. 우리대학 입학 후,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개정 2018.8.16.)
2. 우리대학 입학 전, 고등학교 및 우리대학 또는 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신설 2006.12.26.)
3.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최대 9학점까지의 학점(신설 2008.12.11.), 개정(2019.6.26., 2022.6.21)

② 제1항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6.12.26.)

③ 본조는 편입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점인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6.)

제53조(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9., 2018.2.23.)

졸업학점 \ 수료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30학점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
140학점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
150학점	38학점	75학점	113학점	150학점

제9장 졸업 및 수료

제54조(학년수료) 각 학년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년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5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범대학의 모든 학과·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 컴퓨터공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1.3., 2014.1.9., 2014.12.30., 2017.3.27., 2018.1.15., 2020.2.28., 2021.4.19., 2022.4.15)

제56조(졸업 및 학위) ①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한다.

②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타대학과의 교류협정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6.27., 2022.11.9.)

③ 졸업증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에 전공 및 해당 학위를 표시한다. 다만, 심화전공(단수전공) 이수자에게는 해당 학과(부)·전공 명칭 뒤에 “심화과정”을 표시하고,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각각의 전공 및 학위를 표시하며, 부전공 이수자에게는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08.9.5., 2019.2.25., 2023.5.30.)

제56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2.25.)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2.25.)

[본조신설 2012.6.27.] [제목변경 2019.2.25.]

제56조의3(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57조(조기졸업) ① 조기졸업 신청 후, 신청학기에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총평균평점이 4.2이상인 자는 6학기 또는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22.)

②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졸업의 취소) 졸업자로서 제50조제3항에 의한 이수학점 취소로 인하여 졸업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제10장 학생회 등 자치활동

제59조(학생회) ①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학생자치단체의 조직) ① 학생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보호 육성한다.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외부기관 또는 특정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4. 봉사활동 기타 대외활동

② 간행물의 편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연구, 수업 등 대학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3조(학생지도) ① 각 학과(부)는 매학년 초에 계획을 세워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에 응한다.

② 학생회 및 학생단체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1장 학생포상과 징계

제64조(학칙준수)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연마하여야 한다.

제65조(포상) ① 총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자
3.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등록금 및 장학금(개정 2011.11.3.)

제67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② 총장은 등록금액 및 납입기일을 매 학기 공고한다.(개정 2011.11.3.)

③ 총장은 실험, 실습, 실기 기타 교육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등록금과 함께 또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3.)

④ 학생이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이상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3.)

⑤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징수 한다.(개정 2011.11.3.)

⑥ 가계가 곤란한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총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9.6.19.)(개정 2011.11.3.)

제68조(휴학자의 등록금) ① 등록기간 만료전의 휴학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3.)

② 학기중의 휴학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이후의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3.)

③ 결석자 또는 정학자에 대하여는 결석 또는 정학을 이유로 등록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3.)

④ 휴학자의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11.3.)

제69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1.11.3.)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1.11.3.)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신설 2011.11.3.)
5. 학생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1.11.3.)

제70조 삭제<2012.1.6.>

제71조(장학금)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6.)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1.6.)

③ 장학금의 종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6.)

제72조(증명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장 정원의 학생 및 공개강좌

제73조(정원의 학생)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에 관계없이 입학 및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 각 부처의 소속직원으로서 그 소속장의 위탁을 받은 자
2. 재외국민과 외국인
3. 농어촌학생

제74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범 대학 및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8.)

②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6.21.)

③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금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1.11.3.)

④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75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교에는 평생교육의 진흥, 지역사회 발전 및 산학 협동을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장 학점은행제

제76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77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이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개정 2014.1.9., 2018.1.15.)
3.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② 제1항제3호의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타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76조의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8조(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제56조제2항의 학위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제56조제2항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제56조제2항의 학위종별 및 전공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은 제76조의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유사할 경우라 함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사함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학위수여 절차) ①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및 이 대학이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② 대학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에 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3.6.21.)

제15장 학칙개정

제80조(개정 절차) ① 학칙 개정은 총장 또는 1/5 이상의 재적교수가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10일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발의된 학칙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학칙개정이 발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⑤ 확정된 학칙은 총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 2012.10.11.)

부칙(1979.3.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9.3.1.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81.5.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1.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22조, 23조, 25조, 29조, 30조, 31조 전항에 대하여는 19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981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학적 변동자에 대한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처리 등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82.4.7.)

이 개정학칙은 1982.3.1.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6.11.)

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6.10.)

이 개정학칙은 1983.6.10.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2조는 1983.3.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9.)

이 개정학칙은 1983.9.9.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3.21.)

이 개정학칙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7.)

이 개정학칙은 1985.3.1.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1.1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13조 제1항 제5호는 1986학년도 신입생 선발고사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8.11.)

이 개정학칙은 1986.3.1.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2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2조 단서규정 중 국민윤리교육과와 수학교육과는 1986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87.8.2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9.1.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을 위한 특례규정) 1983.12.22.부터 1987.7.10. 사이에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11조 3, 4, 5항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그 졸업정원이 초과 될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비 고 : 학원사태 관련 제적학생을 복교시키고자 함.

부칙(1988.2.2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8.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1990.2.1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9학년도 전산통계학과 재적생으로서 휴학한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의 학과배정은 전산통계학과에 해당학년이 없을 때에는 통계학과와 전자계산기공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한다.

③ (경과조치) 전항에 의하여 당해학과의 재적생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학과 당해학년의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1.10.2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1.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5조 제①항 6호는 1992년 3월 1일 이전 성적 경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1992.9.2.)

이 개정학칙은 1993.3.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3.31.)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4.1.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4.30.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위 제②, ③항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3.10.26.)

이 개정학칙은 1994.3.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22.)

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부터 시행하되 1995.3.1.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3.26.)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3.1.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되기 전 학과 재적생으로서 휴학한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에 복학하되 해당학과가 없을 때에는 학부 전공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른 전공으로 복학한다.
- ③ (경과조치) 전항에 의하여 당해 전공의 재적생이 전공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전공 당해 학년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 ④ (경과조치) 학부로 변경된 학과는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 ⑤ (경과조치) 학부로 변경된 학과는 학과가 존속할 때까지 교원을 둘 수 있다.
(학부로 변경된 학과 : 한문학과, 민속학과, 동양철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농생물학과, 원예육종학과, 자원식물학과)

부칙(1996.11.7.)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96.9.1.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중 제38조 및 제40조 제1항은 1996학년도 국학부, 전자정보산업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입학생 및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4.17.)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4.17.부터 시행하되, 1997.3.1.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 자연과학대학에 재적중인 학생 중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재료공학과, 금속공학과, 전자정보산업학부 학생은 공과대학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학과 재적생으로서 휴학한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에 복학하되 해당학과가 없을 때에는 학부 전공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른 전공으로 복학한다.
- ④ (경과조치) 학부로 변경된 학과는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의 재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칙(1998.3.1.)

- ① 이 개정학칙은 1998.3.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국민윤리교육과 및 지질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윤리교육과 및 지구환경과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1998.9.10.)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1.)

이 개정학칙은 1999.3.1.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9.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9.8.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 3항은 200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모집단위가 계열, 학과군, 전공군으로 변경된 학과(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서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로 복학하되, 해당 학과(부)가 없을 때에는 휴학 당시의 소속학과에 상응하는 모집단위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이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수료만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2000.4.1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제3항은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00.9.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화학과, 전자공학교육과, 재료공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응용화학과, 전자공학교육과 및 신소재공학부의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0.10.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공학교육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기계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1.8.3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9.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제3항의 별표 1과 제56조 제2 항의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02.3.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생물학과, 통계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생명과학과, 정보통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당시 대학의 규정 중 기획연구실(장), 학적과(장)·수업과(장), 학생과(장)·후생과(장), 장학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연구지원담당관(실), 수서과(장)·정리과(장)·열람과(장)는 기획연구처(장), 학사관리과(장), 학생지원과(장), 장학취업과(장), 기획홍보과(장), 연구지원과(장), 학술정보과(장)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2.3.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7.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9.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별표 1과 제56조 제2항의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03.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은 2003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1.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6.)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기전자공학교육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정보전자공학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4.11.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모집단위 명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생활환경복지학과는 2005학년도 1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하고 가정관리학과와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 학년 재학생의 모집단위 명칭(생활환경복지학과 또는 가정관리학과)으로 한다.
2. 식품가공학전공 및 생물자원환경학전공의 재적생은 식품생명공학전공 및 생약자원학전공으로 한다. 단, 2005학년도를 기준으로 생물자원환경학전공의 4학년 재학생은 제외하며, 제외 대상자가 휴학 후 2006학년도이후 복학할 경우에는 생약자원학전공으로 한다.

부칙(2005.3.1.)

이 학칙은 2005.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제3항의 별표 1과 제56조 제2항의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06.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독어독문학과에서 유럽문화학과로의 모집단위 명칭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① 유럽문화학과는 2006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독어독문학과와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년의 재학생 모집단위 명칭으로 한다.

부칙(2005.12.6.)

이 학칙은 2006.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25.)

이 학칙은 2007.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8.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농생물학전공에서 식물의학전공으로의 모집단위 명칭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① 식물의학전공은 2007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농생물학전공의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년의 재학생 모집단위 명칭으로 한다.

부칙(2006.10.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7조의 3의 공학교육인증은 2005학년도 공과대학 입학생(복학·전과·재입학·편입학 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공학과 입학생은 제외한다.

부칙(2006.1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18.)

이 학칙은 200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유럽문화학과(또는 독어독문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유럽문화·관광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중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학위종별 및 전공’ 중 ‘경영학사’에 ‘소비자학전공’을 포함하는 것은 2009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중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학위종별 및 전공’에 ‘문화재수리학사, 철학논술학사, 한문고전국역학사’로 ‘문화재수리전공, 철학논술전공, 한문고전국역전공’을 신설하는 것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모집단위가 국학·역사계열인 한문학전공, 민속학전공, 동양철학전공, 사학과와 법·행정학과군의 법학과와 행정학과, 생활환경복지·의류학과군의 생활환경복지학과와 의류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한문학과, 민속학과, 동양철학과, 사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의류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의 모집단위로 입학하여 전공 또는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재학생과 휴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재학생은 이 학칙 시행일 전 전공(학과)결정 방법에 따라 관련학과로 배정
2. 휴학생은 복학시점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련학과로 배정

③ 제2항에 의하여 학과별 최대 허용인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학년의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동대학교 제 규정 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과 학기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부칙(2009.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의 규정 중 학생진로지원처(장), 기획연구처(장), 기획홍보과(장), 대외교류협력센터(장)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기획과(장), 대외협력본부(장)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4.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모집단위가 기계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군,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군, 물질과학학과군, 생명환경정보학과군, 생약자원·식물의학전공군, 응용생명과학전공군, 신소재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군, 경상학과군, 컴퓨터교육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생명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정보통계학과, 생약자원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원예육종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금속공학전공, 세라믹공학전공,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정보과학교육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의 모집단위로 입학하여 전공 또는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재학생과 휴학생 및 재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재학생은 이 학칙 시행일 전 전공(학과)결정 방법에 따라 관련학과로 배정
2. 휴학생 및 재적생은 복학 및 재입학 시점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련학과로 배정

③ 제2항에 의하여 학과별 최대 허용인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학과 해당학년의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42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6.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제39조제1항과 제55조의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금속공학전공, 세라믹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응용신소재공학전공에 각각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신소재공학부의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제4호의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2일 이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의 규정 중 “납입금”은 “등록금”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 학칙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이 대학교 규정 중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생약자원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원예육종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약자원학과, 식물의학과, 원예육종학과, 식품생명공학과에 각각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생명자원과학부의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배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이 대학교의 규정 중 “경리과”는 “재무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62호, 2013.6.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3학년도 1학기 연계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887호, 201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45조제1항 내지 제2항, 제53조, 제55조의 개정학칙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896호, 2014.3.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03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정보전자공학교육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전자공학교육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이 대학교의 규정 중 “인력개발본부”는 “학생진로취업본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909호, 2014.7.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5항의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개정 2015.2.25.)

제2조(학점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5.2.25.]

제3조(수강학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강학점은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2015.2.25.)]

부칙(규정 제927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5.2.25.]

제2조(재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2014.7.17. 개정 학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5.2.25.]

부칙(규정 제930호 2015.2.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37호 2015.4.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2의 개정학칙 중 청소년교육전공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소년교육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학칙 중 ‘청소년교육전공’의 연계전공 학위는 2013학년도 이전까지 신청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941호, 2015.7.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이 대학교의 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및 “교육부장관”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973호 2016.1.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84호, 2016.3.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993호, 2016.6.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39호, 2016.8.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46호 2016.11.22.)

이 학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64호 2017.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74호,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정보과학교육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컴퓨터교육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077호, 2017.3.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3조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55조의 개정학칙과 별표1, 별표2의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6.26.)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개정 후 변경되는 학부 및 개설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회계학부 경영학전공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회계학부 회계학전공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과 소속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학과(전공) 통합 및 명칭 변경과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부)·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8.4.10., 2019.2.25.)

1.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과 응용신소재공학전공을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이전 재적생이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2.25.)
2.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생명과학대학 원예육종학과와 생약자원학과를 적용한다. 다만, 2018학년도 이전 재적생이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2.25.)

② 동조에 따라 학과(부) 학생의 모집단위는 제1항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개정 학칙 시행전의 학과(부) 편제는 2022년 2월말까지 존속한다.(신설 2019.2.25.)

제4조(소속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인문예술대학 중어중문학과
인문대학 유럽문화·관광학과	인문예술대학 유럽문화·관광학과
인문대학 한문학과	인문예술대학 한문학과
인문대학 민속학과	인문예술대학 민속학과
인문대학 동양철학과	인문예술대학 동양철학과
인문대학 사학과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인문예술대학 음악과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인문예술대학 미술학과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인문예술대학 의류학과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자연과학대학 식물외학과	생명과학대학 식물외학과
자연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생명과학대학 간호학과

제5조(학부제로 통합 및 소속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학부제로 통합되고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의 학부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과학전공
신설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백신공학전공

제6조(학과 명칭 변경 및 소속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학과 명칭과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부칙(규정 제1090호, 2017.6.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2의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09호 2017.11.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22호, 2018.1.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55조의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양학점,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의 이수 기준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개정 당시 법학과 재적생, 신소재공학부 응용신소재공학전공과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 중 산학협동교육인정 프로그램을 이수중인 학생의 졸업학점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개정 전에 휴학한 학생이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8.2.23.)

제3조(연계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종전의 연계전공은 융합전공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124호, 2018.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학칙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132호, 2018.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학칙과 별표2의 개정학칙 중 명칭변경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된 융합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학칙에 신설된 융합전공은 2018학년도 융합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143호, 2018.8.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67호, 2019.2.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01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1과 별표2의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명칭이 변경된 기계로봇공학과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재적생이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1240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 확대에 따른 경과 조치) 제55조의 개정학칙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신설된 융합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학칙에 신설된 융합전공은 2019학년도 창의융합학부 입학생 및 2020학년도 융합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267호, 2020.6.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69호, 2020.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95호, 2021.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00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합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심리서비스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심리과학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324호, 2021.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 개정학칙, 별표1과 별표2의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제무역학부, 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경제무역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제학과 또는 무역학과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경제학과에, 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무역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응용신소재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반도체-에너지신소재공학부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응용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2. AI융합학과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1332호, 2021.5.13.)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34호, 2021.6.30.)

이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71호, 2021.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78호, 2022.2.24.)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413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5조의 개정 학칙과 별표1, 별표2의 개정학칙과 명칭변경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예술대학 중국어문·문화학과, 문화유산학과, 공연예술음악과, 사범대학 전기전자교육과,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예술대학 중어중문학과, 민속학과, 음악과, 사범대학 전자공학교육과,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AI융합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토목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소속 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과	과학기술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체육학과
생명과학대학 식물의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식물의학과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생명과학대학 간호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간호학과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제4조(학과 명칭 변경 및 소속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학과 명칭과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이전 재적하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소속 대학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개정 전	개정 후
인문예술대학 의류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사회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아동·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센서공학과
자연과학대학 응용화학학과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공학과

제5조(학과 및 학부 소속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사회과학대학 경영회계학부 회계세무전공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경영회계학부 회계학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미술학과 동양화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미술학과 한국화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2. 경영회계학부 회계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회계학부 회계세무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학부 분리, 학과 명칭 변경 및 소속 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생명과학과, 백신생명공학과, 스마트원예과학과, 산림과학과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백신공학전공, 원예육종학과, 생약자원학과, 원예·생약융합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생명과학과 또는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백신생명공학과를 적용할 수 있다.
2.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생명과학과에, 생명과학대학 생명백신공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백신생명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3. 생명과학대학 원예·생약융합학부, 원예육종학과, 생약자원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학부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기·신소재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 첨단재료공학과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 반도체·에너지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2.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응용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1423호, 2022.6.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453호, 2022.1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459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 학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전공 이수에 따른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 학칙은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484호,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1항, 별표1, 별표2의 개정학칙과 명칭변경 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과 후 학과(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예술대학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아동학전공, 공과대학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자유전공학부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예술대학 동양철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아동·사회복지학과, 생활복지학과,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소속 대학 변경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소속 대학과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학년도 이전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소속 대학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인문예술대학 유립문화·관광학과	사회과학대학 문화관광학과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사회과학대학 데이터과학과

제4조(소속 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아래와 같이 소속 대학이 변경되는 학과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학년도 이전 재적하는 학생은 개정 후 변경되는 대학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전	개정 후
과학기술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지구환경과학과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공학과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과

제5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예술대학 한자문화콘텐츠학과, 공과대학 반도체·신소재공학과, 로봇공학과, 디지털ICT공학과는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예술대학 한문학과, 공과대학 첨단재료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모집단위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휴학한 후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학과 소속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예술대학 미술학과 입체조형전공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당시 미술학과 조소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미술학과 입체조형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497호, 2023.8.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3.5.30.)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편 제		모집단위	입학정원	개설전공 (전공별 기준정원)
	학과(부)			2024	
인문 예술 대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국 어 국 문 학 과	국 어 국 문 학 과	19	
	중국어문·문화학과	중국어문·문화학과	중국어문·문화학과	16	
	한자문화콘텐츠학과	한자문화콘텐츠학과	한자문화콘텐츠학과	12	
	문 화 유 산 학 과	문 화 유 산 학 과	문 화 유 산 학 과	15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19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27	
	공연 예술 음악 과	공연 예술 음악 과	공연 예술 음악 과	12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실용음악전공
미 술 학 과	미 술 학 과	미 술 학 과	18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입체조형전공	
사회 과학 대학	경 영 회 계 학 부	경 영 회 계 학 부	경 영 회 계 학 부	52	경영학전공(26), 회계세무전공(26)
	경 제 학 과	경 제 학 과	경 제 학 과	17	
	무 역 학 과	무 역 학 과	무 역 학 과	17	
	법 학 과	법 학 과	법 학 과	24	
	행 정 학 과	행 정 학 과	행 정 학 과	27	
	문 화 관 광 학 과	문 화 관 광 학 과	문 화 관 광 학 과	14	
	데 이 터 과 학 과	데 이 터 과 학 과	데 이 터 과 학 과	16	
사범 대학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과	15	
	윤 리 교 육 과	윤 리 교 육 과	윤 리 교 육 과	15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과	22	
	교 육 공 학 과	교 육 공 학 과	교 육 공 학 과	18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과	19	
	컴 퓨 터 교 육 과	컴 퓨 터 교 육 과	컴 퓨 터 교 육 과	26	
	전 기 전 자 교 육 과	전 기 전 자 교 육 과	전 기 전 자 교 육 과	26	
기 계 교 육 과	기 계 교 육 과	기 계 교 육 과	26		
생명학· 건강지 대학	아동·사회복지학부	아동·사회복지학부	아동·사회복지학부	55	사회복지학전공(20), 아동학전공(20), 통합모집(15)
	생 명 과 학 과	생 명 과 학 과	생 명 과 학 과	27	
	백 신 생 명 공 학 과	백 신 생 명 공 학 과	백 신 생 명 공 학 과	28	
	스 마 트 윈 예 과 학 과	스 마 트 윈 예 과 학 과	스 마 트 윈 예 과 학 과	27	
	산 림 과 학 과	산 림 과 학 과	산 림 과 학 과	27	
	식 물 의 학 과	식 물 의 학 과	식 물 의 학 과	28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31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74	
	식 품 영 양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27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40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27	
	지 구 환 경 과 학 과	지 구 환 경 과 학 과	지 구 환 경 과 학 과	12	
공과 대학	전 기·신소재공학부	전 기·신소재공학부	전 기·신소재공학부	28	전기에너지공학전공(15),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13)
	반도체·신소재공학과	반도체·신소재공학과	반도체·신소재공학과	20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24	
	스 마 트 모 빌 리 티 공 학 과	스 마 트 모 빌 리 티 공 학 과	스 마 트 모 빌 리 티 공 학 과	40	
	로 봇 공 학 과	로 봇 공 학 과	로 봇 공 학 과	19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과	29	
	디 지 털 ICT 공 학 과	디 지 털 ICT 공 학 과	디 지 털 ICT 공 학 과	18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과	28	
	소 프 트 웨 어 융 합 학 과	소 프 트 웨 어 융 합 학 과	소 프 트 웨 어 융 합 학 과	29	
	건 설 시 스템 공 학 과	건 설 시 스템 공 학 과	건 설 시 스템 공 학 과	24	
	환 경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과	19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과	23	
	스 마 트 센 서 공 학 과	스 마 트 센 서 공 학 과	스 마 트 센 서 공 학 과	20	
화 학 생 명 공 학 과	화 학 생 명 공 학 과	화 학 생 명 공 학 과	18		
자 유 전 공 학 부			65	인문사회/이공계열 통합 모집	
성 인 학 습 자 학 부			30	스포츠레저학전공/사회복지학전공 통합모집	
합계(51개 모집단위: 5개 학부 46개 학과)			1,309		

[별표 1-2] (신설 2022.4.15.)(별표1에서 이동 2023.5.30.)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편 제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개설전공 (전공별 기준정원)
	학과(부)			2023	
인문 예술 대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국 어 국 문 학 과	21		
	중 국 어 문 · 문 화 학 과	중 국 어 문 · 문 화 학 과	22		
	유 럽 문 화 · 관 광 학 과	유 럽 문 화 · 관 광 학 과	20		
	한 문 학 과	한 문 학 과	18		
	문 화 유 산 학 과	문 화 유 산 학 과	20		
	동 양 철 학 과	동 양 철 학 과	19		
	사 학 과	사 학 과	27		
	공 연 예 술 음 악 과	공 연 예 술 음 악 과	19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실용음악전공	
	미 술 학 과	미 술 학 과	21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사 회 과 학 대 학	경 영 회 계 학 부	경 영 회 계 학 부	56	경영학전공(28), 회계세무전공(28)	
	경 제 학 과	경 제 학 과	21		
	무 역 학 과	무 역 학 과	21		
	법 학 과	법 학 과	24		
	행 정 학 과	행 정 학 과	27		
사 범 대 학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과	15		
	운 리 교 육 과	운 리 교 육 과	15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과	22		
	교 육 공 학 과	교 육 공 학 과	18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과	19		
	컴 퓨 터 교 육 과	컴 퓨 터 교 육 과	26		
	전 기 전 자 교 육 과	전 기 전 자 교 육 과	26		
과 학 기 술 대 학	화 학 생 명 공 학 과	화 학 생 명 공 학 과	24		
	지 구 환 경 과 학 과	지 구 환 경 과 학 과	19		
	정 보 통 계 학 과	정 보 통 계 학 과	22		
생 명 과 학 · 건 강 복 지 대 학	생 명 과 학 과	생 명 과 학 과	30		
	백 신 생 명 공 학 과	백 신 생 명 공 학 과	30		
	스 마 트 원 예 과 학 과	스 마 트 원 예 과 학 과	30		
	산 림 과 학 과	산 림 과 학 과	30		
	식 물 의 학 과	식 물 의 학 과	30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35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64		
	식 품 영 양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30		
	아 동 · 사 회 복 지 학 과	아 동 · 사 회 복 지 학 과	40		
	체 육 학 과	체육 학 과	45		
공 과 대 학	패 션 라 이 프 스타 일 학 과	패 션 라 이 프 스타 일 학 과	30		
	전 기 · 신 소 재 공 학 부	전 기 · 신 소 재 공 학 부	30	전기에너지공학전공(15),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15)	
	첨 단 재 료 공 학 과	첨 단 재 료 공 학 과	24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33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24		
	기 계 로 봇 공 학 과	기 계 로 봇 공 학 과	23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과	30		
	정 보 통 신 공 학 과	정 보 통 신 공 학 과	22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과	28		
	소 프 트 웨 어 융 합 학 과	소 프 트 웨 어 융 합 학 과	30		
	건 설 시 스템 공 학 과	건 설 시 스템 공 학 과	26		
	환 경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과	24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과	23		
스 마 트 센 서 공 학 과	스 마 트 센 서 공 학 과	20			
창의융합학부			71	인문사회/이공계열 통합 모집	
합계(50개 모집단위: 3개 학부 47개 학과)			1,370		

[별표 1-3] (신설 2021.4.19.)(개정 2021.5.13.)(별표1에서 이동 2022.4.15)(별표1-2에서 이동 2023.5.30.)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편 제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개설전공 (전공별 기준정원)
	학과(부)			2022	
인예 대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국 어 국 문 학 과	국 어 국 문 학 과	31	
	중 어 중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21	
	유 럽 문 화 · 관 광 학 과	유 럽 문 화 · 관 광 학 과	유 럽 문 화 · 관 광 학 과	22	
	한 문 학 과	한 문 학 과	한 문 학 과	22	
	민 속 학 과	민 속 학 과	민 속 학 과	22	
	동 양 철 학 과	동 양 철 학 과	동 양 철 학 과	20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25	
	의 류 학 과	의 류 학 과	의 류 학 과	25	
	음 악 과	음 악 과	음 악 과	21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실용음악전공
사회 대학	미 술 학 과	미 술 학 과	미 술 학 과	26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경 영 회 계 학 부	경 영 회 계 학 부	경 영 회 계 학 부	56	경영학전공(28), 회계학전공(28)
	경 제 학 과	경 제 학 과	경 제 학 과	23	
	무 역 학 과	무 역 학 과	무 역 학 과	23	
	법 학 과	법 학 과	법 학 과	27	
	행 정 학 과	행 정 학 과	행 정 학 과	30	
사범 대학	생 활 복 지 학 과	생 활 복 지 학 과	생 활 복 지 학 과	35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교 육 과	15	
	윤 리 교 육 과	윤 리 교 육 과	윤 리 교 육 과	15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과	22	
	교 육 공 학 과	교 육 공 학 과	교 육 공 학 과	18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과	19	
	컴 퓨 터 교 육 과	컴 퓨 터 교 육 과	컴 퓨 터 교 육 과	26	
자연 과학 대학	전 자 공 학 교 육 과	전 자 공 학 교 육 과	전 자 공 학 교 육 과	26	
	기 계 교 육 과	기 계 교 육 과	기 계 교 육 과	26	
	물 리 학 과	물 리 학 과	물 리 학 과	23	
	응 용 화 학 과	응 용 화 학 과	응 용 화 학 과	24	
생명 과학 대학	지 구 환 경 과 학 과	지 구 환 경 과 학 과	지 구 환 경 과 학 과	22	
	정 보 통 계 학 과	정 보 통 계 학 과	정 보 통 계 학 과	22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40	
	생 명 공 학 부	생 명 공 학 부	생 명 공 학 부	50	생명과학전공(29), 생명백신공학전공(21)
	원 예 · 생 약 융 합 학 부	원 예 · 생 약 융 합 학 부	원 예 · 생 약 융 합 학 부	64	
	식 물 의 학 과	식 물 의 학 과	식 물 의 학 과	29	
공과 대학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30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간 호 학 과	50	
	식 품 영 양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25	
	반 도 체 · 에 너 지 신 소 재 공 학 부	반 도 체 · 에 너 지 신 소 재 공 학 부	반 도 체 · 에 너 지 신 소 재 공 학 부	68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30	
	기 계 자 동 차 공 학 과	기 계 자 동 차 공 학 과	기 계 자 동 차 공 학 과	24	
	기 계 로 봇 공 학 과	기 계 로 봇 공 학 과	기 계 로 봇 공 학 과	30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과	30	
	정 보 통 신 공 학 과	정 보 통 신 공 학 과	정 보 통 신 공 학 과	23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과	30	
창의융합학부	A I 융 합 학 과	A I 융 합 학 과	A I 융 합 학 과	34	
	토 목 공 학 과	토 목 공 학 과	토 목 공 학 과	29	
	환 경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과	24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과	26	
합계(47개 모집단위: 5개 학부 42개 학과)			1,411	인문사회계열(53), 이공계열(35)	

[별표 1-4] (신설 2017.3.27.)(개정 2018.4.10., 2019.6.26., 2021.2.25.)(별표1에서 이동 2021.4.19.)(별표1-2에서 이동 2022.4.15.)(별표1-3에서 이동 2023.5.30.)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편 제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개설전공(전공별 기준정원)
	학과(부)			2021	2020	2019	
인문예술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23	23	23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24	24	24		
	유럽문화·관광학과	유럽문화·관광학과	22	22	22		
	한문학과	한문학과	22	22	22		
	민속학과	민속학과	25	25	25		
	동양철학과	동양철학과	23	23	23		
	사학과	사학과	23	23	23		
	의류학과	의류학과	25	25	25		
	음악과	음악과	26	26	26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미술학과	미술학과	26	26	26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사회과학대	경제무역학부	경제무역학부	54	54	54	경제학전공(27), 무역학전공(27)	
	경영회계학부	경영회계학부	56	56	56	경영학전공(28), 회계학전공(28)	
	법학과	법학과	24	24	24		
	행정학과	행정학과	23	23	23		
	생활복지학과	생활복지학과	25	25	25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15	15	15		
	윤리교육과	윤리교육과	15	15	15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22	22	22		
	교육공학과	교육공학과	18	18	18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19	19	19		
	컴퓨터교육과	컴퓨터교육과	26	26	26		
	전자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26	26	26		
	기계교육과	기계교육과	26	26	26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물리학과	23	23	23		
	응용화학과	응용화학과	24	24	24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24	24	24		
	정보통계학과	정보통계학과	22	22	22		
	체육학과	체육학과	29	29	29		
생명과학대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50	50	50	생명과학전공(29), 생명백신공학전공(21)	
	원예·생약융합학부	원예·생약융합학부	64	64	64		
	식물 의 학 과	식물 의 학 과	22	22	22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22	22	22		
	간호학과	간호학과	40	40	40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25	25	25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부	68	68	68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24	24	24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24	24	24		
	기계로봇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24	24	-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	-	24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23	23	23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23	23	23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24	24	24		
	멀티미디어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24	24	24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22	22	22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24	24	24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23	23	23		
창의융합학부			220	220	220	인문사회계열(95), 이공계열(125)	
합계(46개 모집단위: 6개 학부 40개 학과)			1,456	1,456	1,456		

[별표 1-5] (개정 2009.8.27., 2011.11.3., 2012.10.11., 2014.5.15., 2014.7.17., 2015.7.16., 2016.6.29., 2017.2.24., 2017.6.26.) (별표1에서 이동 2017.3.27.)(별표1-2에서 이동 2021.4.19.)(별표1-3에서 이동 2022.4.15) (별표1-4에서 이동 2023.5.30.)

편제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단과대학	편 제		입학정원						개설학과(전공)
	학 과 (부)	모 집 단 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31	31	32	35	36	36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32	32	32	34	35	35	중어중문학과
	유럽문화·관광학과	유럽문화·관광학과	29	29	29	29	30	30	유럽문화·관광학과
	한문학과	한문학과	30	30	32	34	35	35	한문학과
	민속학과	민속학과	33	33	34	38	40	40	민속학과
	동양철학과	동양철학과	31	31	32	35	36	36	동양철학과
	사학과	사학과	31	31	32	35	36	36	사학과
사회과학대	법학과	법학과	32	32	33	37	40	40	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31	31	32	35	36	36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31	31	32	35	36	36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32	32	33	37	39	39	경영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31	31	32	35	36	36	무역학과
	회계학과	회계학과	32	32	32	35	36	36	회계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15	15	15	15	15	15	국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윤리교육과	15	15	15	15	15	15	윤리교육과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22	22	22	22	22	22	영어교육과
	교육공학과	교육공학과	18	18	18	18	18	18	교육공학과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19	19	19	19	19	19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컴퓨터교육과	26	26	26	26	27	27	컴퓨터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전자공학교육과	26	26	26	26	27	27	전자공학교육과
자연과학대	기계교육과	기계교육과	26	26	26	26	27	27	기계교육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31	31	32	34	35	35	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응용화학과	32	32	32	34	35	35	응용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33	33	34	38	40	40	생명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32	32	33	37	40	40	지구환경과학과
	정보통계학과	정보통계학과	29	29	29	29	30	30	정보통계학과
	생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29	29	29	29	30	30	생약자원학과
	식물의학과	식물의학과	29	29	29	29	30	30	식물의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육종학과	28	28	29	29	30	30	원예육종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29	29	29	29	30	30	식품생명공학과
공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40	40	40	40	-	-	간호학과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32	32	32	34	35	35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응용신소재공학전공	32	32	32	34	35	35	응용신소재공학전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32	32	32	35	36	36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32	32	32	35	36	36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32	32	32	35	36	36	기계설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31	31	32	34	35	35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31	31	32	33	34	34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32	32	32	33	34	34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32	32	32	33	34	34	멀티미디어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30	30	30	30	31	31	토목공학과	
생활과학대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32	32	32	33	34	34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31	31	32	35	36	36	건축공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33	33	33	37	40	40	생활환경복지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33	33	33	37	40	40	의류학과
예술·체육대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33	33	33	37	40	40	식품영양학과
	음악과	음악과	30	30	31	34	36	36	상원공파노전공, 관현악전공, 작곡전공
	미술학과	미술학과	30	30	31	33	35	35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예술·체육대	체육학과	체육학과	33	33	33	37	40	40	체육학과
	계		1,456	1,456	1,476	1,568	1,588	1,588	

[별표 2] (개정 2009.8.27., 2010.11.26., 2011.11.3., 2012.10.11., 2013.6.21., 2014.5.15., 2014.7.17., 2015.4.22., 2017.2.24., 2017.3.27., 2018.1.15., 2018.4.10., 2019.2.25., 2019.6.26. 2020.2.28., 2021.2.25., 2021.4.19., 2022.2.24., 2022.4.15., 2022.11.9. 2023.1.25. 2023.5.30.)

학위 종별 및 전공

학	위	종	별	학과 (부) 및 전공								
문	학	사	사	국어국문학과, 중국어문·문화학과, 문화관광학과, 사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한자문화콘텐츠학과, 문화유산학과,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과학융합전공(융합전공)								
경	영	학	사	경영학전공, 회계세무전공								
경	제	학	사	경제학과, 무역학과								
법	학	사	사	법학과								
행	정	학	사	행정학과								
이	학	사	사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생명과학과, 백신생명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식품영양학과, 데이터과학과								
공	학	사	사	전기전자교육과, 화학생명공학과, 기계교육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로봇공학과, 전기신소재공학부, 전기에너지공학전공, 신소재에너지공학전공, 반도체·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디지털ICT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융합공학전공(융합전공), 지능정보기술융합전공(융합전공), 스마트센서공학과, 전자정보융합전공(융합전공)								
가	정	학	사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아	동	학	사	아동학전공								
농	학	사	사	스마트원예과학과, 산림과학과, 식물의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음	악	학	사	공연예술음악과								
미	술	학	사	미술학과								
체	육	학	사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전공								
교	육	공	학	사	교육공학과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사	회	복	지	학	사	사회복지학전공(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융합전공), 사회복지학전공(성인학습자학부)						
문	화	재	수	리	학	사	문화재수리전공(융합전공)					
문	화	자	원	융	합	학	사	문화자원학융합전공(융합전공)				
스	마	트	팜	융	합	학	사	스마트팜융합전공(융합전공)				
자	율	형	자	동	차	융	합	학	사	자율형자동차융합전공(융합전공)		
디	지	털	전	통	문	화	융	합	학	사	디지털전통문화융합전공(융합전공)	
디	지	털	마	케	팅	융	합	학	사	디지털마케팅융합전공(융합전공)		
문	화	콘	텐	츠	학	사	문화콘텐츠융합전공(융합전공)					
미	디	어	커	뮤	니	케	이	션	학	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융합전공(융합전공)	
글	로	별	융	합	경	영	학	사	이머징마켓&비즈니스융합전공(융합전공)			
A	I	융	합	학	사	AI융합전공(융합전공)						
스	마	트	관	광	융	합	학	사	스마트관광융합전공(융합전공)			
문	화	재	미	술	복	원	학	융	합	학	사	문화재미술복원학융합전공(융합전공)
메	타	K-ART	문	화	콘	텐	츠	융	합	학	사	메타K-ART문화콘텐츠융합전공(융합전공)

[별표 3] (개정 2008.9.5., 2011.11.3.)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4] (신설 2019.2.25. 개정 2023.1.25.)

학교기업

학교기업명	관련 학과(부)	사 업 종 목	소 재 지
국립안동대 학교 학교기업 디아누(The ANU)	스마트원예과학과	농산물, 6차 농산물, 전자상거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무역,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물질분리 및 분석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지역산 학협력관, 공동실험실습관 4층

제 호

졸업증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학과(부) ○○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트랙, ○○마이크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안동대학교 ○○○○ 대학장 ○○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대 학 교 총 장 ○○ 학위 ○○○(인)

학위번호 :

ANDONG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GRADUAT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IN (소속학문 영문명)

WITH ALL ITS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GIVEN AT ANDONG,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학위수여 일자)

(단과대학장 서명)

UNIVERSITY SEAL

(총장서명)

Dean of the (단과대학 영문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 ○ 학(부)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
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안동대학교 ○ ○ ○ ○ 대학장 ○ ○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대 학 교 총 장 ○ ○ 학위 ○ ○ ○ (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안 동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안동대학교-학점-연도-일련번호